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66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서천호 · 조은희 · 우재준
김은혜 · 김용태 · 엄태영
정성국 · 이만희 · 김민전
서지영 · 나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어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빈발, 생산비 및 유통비 상승,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111조제1항, 제121조의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 [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u>2026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받는 소득	② -----		
	-----2031년		
	<u>12월 31일</u> -----		

	③ -----		

	-----20		
	<u>31년 12월 31일</u> -----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 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illegible]

② (생 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⑨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2031년 12월 31일</u>----- -----. ⑧ -----<u>2031년 12월 31일</u>----- -----. 1. ~ 3.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	---